45 - 미곡종합처리장 근로자의 난청

성별 남 나이 61세 직종 가공 직업관련성 있음

1. 개요

근로자 현○○는 1979년부터 약 30년간을 사무 및 도정기계 및 건조기계 등의 조작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009년 3월경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발생하였고, 2010년 6월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귀의 감각 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을 진단을 받았다.

2. 작업화경

현○○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무 및 도정기계 및 건조기계 등의 조작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기계조작업무를 주로 하였던 가공공장의 소음 수준은 89.5 dB(A)이었다. 소음방지시설이나 안전장구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한 귀마개외에는 청력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고, 작업환경측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2003년에서 2008년까지 허리 통증,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만성치주염 등으로 치료 받은 병력 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다. 2009년 3월 청력감소 증상으로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받았고, 2009년 7월 좌측 귀에 급성화농성 중이염으로 치료 받았다. 2007년 이전에는 청력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2010년 6월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진단을 받았다(순음청력검사: 좌측 90 dBHL, 우측 50 dBHL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 dBHL, 좌측 무반응).

4. 결론

현○○의 소음성 난청은

-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 30년간 미곡처리장에서 도정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85-90 dB(A)의 소음에 일 8시간, 월 20일, 년 200일 이상 근무 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평가되며,
- 좌측 귀의 과거 화농성 중이염의 과거력이 의심되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 청의 양상을 보이며,
- 좌측 고도난청, 우측 중도난청으로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소음 수준이 현재의 청력의 감소에 영향이 있음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